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2. 16 선고 2020가단23541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

담당변호사 박영일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음

담당변호사 강신범

변 론 종 결 2021. 1. 12.

판 결 선 고 2021. 2. 16.

주 문

1.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. 6. 25.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50,145,5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2. 피고는,

가. 원고에게 28,036,42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

나. 주식회사 공영홈쇼핑에게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8. 10.경부터 2019. 2.경까지 주식회사 C(이하 ‘C’이라 한다)에게 두 차례에 걸쳐 라제리류 총 25,124장을 납품하였으나, C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. 이에 원고는 2019. 5. 15.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30657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,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C이 이의신청을 하여 2019. 6. 5.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0596호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2019. 10. 17. 위 법원으로부터 ‘C은 원고에게 50,145,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4. 1.부터 2019. 6. 21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’는 취지의 판결(이하 ‘관련 민사사건 판결’이라 한다)을 선고받았다.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대하여 C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9. 11. 2.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피고는 2019. 6. 25. C과 별지 기재 채권(이하 ‘이 사건 채권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(이하 ‘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면서 C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공영홈쇼핑(이하 ‘공영홈쇼핑’이라 한다)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
다. 그 후 피고는 2019. 7. 31. 공영홈쇼핑으로부터 28,036,426원을 지급받았다. 라. 한편 C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갑 제7호증의 1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 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C에 대하여 50,145,56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. 따라서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

1) 관련 법리

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거나,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(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다28819, 28826 판결 등 참조),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4다43909 판결 참조). 2) 판단

가) C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, C은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또한 C로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될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,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나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가 C의 미수금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고, C 역시 피고의 물품 공급이 없으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피고와 C 모두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C이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- ① 피고가 C의 미수금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.
- ② C이 피고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는 물품을 조달할 수 없어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.
- ③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C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불과하고, 위 채권양도가 C의 경영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.

다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1) 관련 법리

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,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,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15. 11. 17.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).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,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).

2) 판단

가)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,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.

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따라 C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(50,145,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4. 1.부터 2019. 6. 21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)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

50,145,5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.

나) 나아가 피고가 2019. 7. 31. 공영홈쇼핑으로부터 28,036,426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채권 중 위 28,036,426원 부분은 이미 소멸되어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. 따라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28,036,42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또한 이 사건 채권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아직까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공영홈쇼핑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대원

[별지]

채권의 표시

양도인(채권자) : 주식회사

양수인(채부자) : 주식회사 공영홍요령

양도할 채권 : 양도인이 양수인과의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양수인이
2019.6.25.경 진행된 상품판매방송에 따라 양도인이 양수인으
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금 채권 전부

끝,